

의안  
번호

395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2024. 11. 22.

전문위원 김 동 성

### 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경수현의원 외 10명

나. 의안번호 : 제395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6.

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5.

### 2. 제안이유

-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, 국기 보급사업 등 국기 선양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태극기의 존엄성을 고취하고 확산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을 규정하고,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의 성북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함(안 제4조)

라. 국기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한민국국기법」 , 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」  
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4. 11. 08. ~ 2024. 11. 12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기제양 및 관리,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됨.

### 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는 목적을, 안 제2조(정의)는 “대한민국의 국기”와 “국기선양”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(국기의 제양일 등)에서는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국기를 제양해야 하는 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이 정한 국기 제양일 이외에 성북구 국기 제양일을 정부 공인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, 성북구민의 날(매년 5월 7일), 경술국치일(8월 29일), 그 밖에 성북구의회에서 국기 제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로 정함.

####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제1항제5호

제8조(국기의 제양일 등) ① 국기를 제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
2. 「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**현충일 및 국군의 날**
3. 「국가장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
4.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
5. **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**

- 안 제5조(국기선양사업)는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, 국기보급사업,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·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아울러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4항<sup>1)</sup>을 근거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「주민등록법」 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에게 국기 무상 보급 근거를 마련함.
- 안 제6조(가로기의 게양)는 국기선양을 위해 주요 도로에 가로기 게양과 설치 및 관리규정을 명시함.
- 안 제7조(국기 판매대 및 구기 수거함의 설치·운영)는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함.

## 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5조 및 제8조,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기의 존엄성 유지 및 국기선양 활동을 위한 성북구의 국기 게양일 지정과 국기의 관리 및 선양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 되며,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### 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5조, 시행령 제2조

1)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제15조(국기 보급 확대)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,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.

제5조(국기의 존엄성 등)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·계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)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·지원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「국기계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」 제정 현황(2024.8.현재)

■ 서울시 : 서울특별시 포함 13개 자치단체

자치단체명

서울시, 강동, 강북, 강서, 관악, 구로, 금천, 노원, 동대문, 동작, 성동, 양천, 영등포